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변리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 내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수정 및 구체화 (안 제2조 제6항)

- 조문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문장 내 불필요한 표현 삭제 및 수정 (안 제2조 제6항 본문)
- 현행 조문은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부정한 수강행위에 대한 제한이 어려웠으므로, 조문 표현을 수정 (안 제2조 제6항 제1호)
- 해당 조문의 입법목적은, 실무수습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아니라

실무수습을 ‘부실하게 이수’한 경우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문 내용
수정 및 제한 사항 구체화 (안 제2조 제6항 제2호)

나. ‘이러닝’ 실시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7항)

- 집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러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다. 집합교육 ‘성취도 평가’ 실시 근거 신설 (안 제2조 제8항)

- 집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그간 자체적으로 실시해온 ‘성취도
평가’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라. 하위법령 위임 범위 수정 (안 제2조 제9항)

- 동 조 개정에 따른 제7항 및 제8항의 신설로, 하위법령 위임 범위를
‘제1항부터 제8항’까지로 수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7항에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이러닝 개념을 차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18. ~ 8.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 등”을 “사람”으로,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을 “그 실무수습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를 “그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을 “현저히 부실하게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려고 했거나 이수한 경우

⑦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러닝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러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실무수습) ① ~ ⑤ (생략)	제2조(실무수습)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허청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u>사람의 해당 실무수습의 내용</u>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u>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해당 실무수습 실적을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u>	⑥ ----- <u>사람-----</u> ----- ----- <u>그 실무수습 실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u> ----- <u>그 실무수습 실적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실적이 제출된 경우</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을 이수하려고 했거나 이수한 경우</u>
2. <u>실무수습 내용이 현저하게 부실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u>	2. <u>현저히 부실하게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u> ----- -----
<신 설>	⑦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u><신 설></u>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수습의 내용, 기관, 절차 등 실무수습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u>제1호에 따른 이러닝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u> ⑧ 제3항에 따라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 집합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 제8항-----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 481 - 3940